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689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영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2019. 11. 12.자 및 같은 달 15.자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2019. 11. 12.자 및 같은 달 15.자 각 임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1,770,912원, 원고 B에게 74,458,1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1,770,912원, 원고 B에게 74,458,1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소외 D에게 대여원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B은 소외 D에게 대여원금 8,591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B은 소외 D으로부터 2021. 6. 4.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D은 전 배우자인 E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등으로, 2019. 11. 11. 45,930,000원, 같은 달 15. 50,000,000원을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수령하였다.

라. 소외 D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위 돈을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9. 11. 12. 45,900,000원, 같은 달 15. 50,329,1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9. 11.경 자신의 위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소외 D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소외 D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위 돈들을 2019. 11. 18.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바. 피고와 D은 2020. 9. 25.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소외 D에 대하여 2021. 12. 6.까지 원고 A은 대여원리금 31,625,205원, 원고 B은 대여원리금 108,160,620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외 D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19. 11. 12. 45,900,000원, 같은 달 15. 50,329,1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주위적으로, 위 송금행위는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각 임차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D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예비적으로, 위 송금행위는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D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5)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위 돈들이 모두 인출되어 사용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이 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돈들을 원고들의 채권액으로 안분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21,770,912원, 원고 B에게 74,458,187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D이 이 사건 계좌로 위 돈들을 송금한 행위가 각 임차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D이 이 사건 계좌로 위 돈들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외 D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소외 D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위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부분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D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위 돈들을 2019. 11. 18.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수익자인 피고로부터 채무자인 소외 D으로의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계좌로 위 돈들을 송금한 행위를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대로 각 임치계약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